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증기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7. 12. 17.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2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7. 11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50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 ('97. 12. 17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희용 청소과장)

가. 제안 이유

폐기물 배출일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일정시제를 적극 추진하고, 폐가전제품 및 폐가류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 납부를 동사무소 신고후 고지를 발급받아 은행 납부후 신고필증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수수료 납부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는 것으로 간소화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 배출일시를 규정하여 정일정시제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. (안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)
-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를 구수입증지로 전환함. (안 제33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은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시 간선도로변에 장시간 방치로 인한 미관상의 불편함과 쓰레기봉투 주변의 무단투기 성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정일·정시 배출 및 수거체계 방식으로 전환하고, 종이와 캔류등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품 대면수거 전담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여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- 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시 등사무소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를 납부하면 것을 구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그간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됨.
- 별지 제10호 서식중 "배출예정일"은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"배출 예정일시"로 하고, 동 서식 내용중 "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"은 입법체계상 "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"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별지 제11호 서식중 "연번"은 "접수번호"로 하고 신고내역중 "배출일"과 "장소"는 별지 제10호의 내용과 같이 각각 "배출예정일시"와 "배출장소"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종량제폐기물 배출 경일정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근거인가?
- 답변요지(염율렬 시민국장) :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 "일시"를 삽입한 것임.
-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인가?
- 답변요지(윤희용 청소과장) :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.

5. 보론요지 : 수정(안)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유동균 위원 외 1인

나. 수정이유

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.

다. 수정 주요 골자

- "제33조제2항"을 "제10조제2항제4호"로 함. (별지 제10호 서식)
- "연번"을 "접수번호"로 하고, "배출일"을 "배출예정일시"로 하며, "장소"를 "배출장소"로 함. (별지 제11호 서식)

7. 심사결과 : 수정(안) 기결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수정(안)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에 대한수정(안)

의 安	
번 호	

제안년월일 : 1997. 12. 17.

제안자 : 시민보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.

2. 수정 주요 골자

- "제33조제2항"을 "제10조제2항제4호"로 함. (안 별지 제10호 서식)
- "연번"을 "접수번호"로 하고, "배출일"을 "배출예정일시"로 하며, "장소"를 "배출 장소"로 함. (별지 제10호 서식)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지 제10호 서식중 "제33조제2항"을 "제10조제2항제4호"로 한다.

안 별지 제11호 서식중 "연번"을 "접수번호"로 하고, "배출일"을 "배출예정일시"로 하며, "장소"를 "배출장소"로 한다.

원안·수정안 대비표

원 안					수 정 안				
(별지 제10호 서식)					(별지 제10호 서식)				
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					처리기간				
접수번호:					즉시		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			
상 호		전 화 번 호							
주 소									
배 출 내 역	폐기물명	규격	수량	배출원인	제사용가능여부 · 가능 () · 불가능 ()				
					제사용가능여부 · 가능 () · 불가능 ()				
배 출 예정일	배 출 장소								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.					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	년 월 일				
신고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신고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
마포구청장 귀하					마포구청장 귀하				
수입증지 첨 부 란									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

제출년월일 : 1997. 1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提案理由

폐기물 배출일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일정시제를 적극 추진하고,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 납부를 동사무소 신고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납부후 신고필증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수수료 납부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구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는 것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- 폐기물 배출일시를 규정하여 정일정시제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
(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)
-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를 구수입증지로 전환함(안 제33조제2항)

3. 關系法條

- 폐기물관리법(1995.8.4 법률 제4970호) 제13조
- 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069호) 제15조

4. 參考事項

-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*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중 "시간"을 "일시"로 한다.

제17조중 "지정된" 다음에 "일시"를 삽입한다.

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하며, 등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형폐기물을 접수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.

제33조 제5항중 "제2항의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납부고지서,"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0호 서식)

					처리기간
					즉시
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					
접수번호 :					
성명			주민등록번호		
상호			전화번호		
주소					
배출내역	폐기물명	규격	수량	배출원인	재사용 가능여부
					· 가능()
					· 불가능()
배출 예정일			배출장소		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마포구청장 귀하

수입증지	
첨부란	

(별지 제11호 서식)

대형폐기물 접수·처리 대장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)	제10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)
① 생략	① (현행과 같음)
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 제폐기물, 연탄제, 재활용가능품, 대형폐기물,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	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
1.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 (이하 "규격봉투"라 한다)에 담아 둑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·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.	1. _____ _____ _____ 일시 _____ _____.
2. 생략	2. (현행과 같음)
3. 재활용가능품은 "별표1"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·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·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.	3. _____ _____ _____ 일시 _____ _____.
4-5. 생략	4-5. (현행과 같음)
③ 생략	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)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구청장이 제작·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둑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	제17조(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) _____ _____ 일시·장소 _____ _____

현 행	개 정 안
한다.	—.
제33조(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) ① 생략 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	제33조(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에 구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하며,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.
③-④ 생략 ⑤ 제1항의 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고지서, 제2항의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납부고지서, 제3항의 규격봉투제작비 납부고지서, 제4항의 폐기물처리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.	③-④ (현행과 같음) ⑤ —————— (삭 제)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.
제34조(가산금 등) ①-② 생략 ③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.	제34조(가산금 등) ①-② (현행과 같음) ③ 삭제